

P.I.R.A.M 국어 생각의 절정  
LEET언어이해 선별집 4주차 해설지

**4주차 <기출 유사 지문 - 비판력>**

2016LEET [20~22] 사회(법) '국가배상 제도' ☆☆

**1문단**

①현대 사회에서 국가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행정 작용을 한다. ②이에 따라 국가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개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③국가배상 제도는 국가 활동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④이 제도는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법원의 판결 곧 판례에 의해 도입된 이래, 여러 나라에서 법률 또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었다. ⑤우리나라도 국가배상법을 제정하여 공무원의 법을 위반한 직무 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①~② #화제 제시**

현대 사회 국가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국가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준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국가에 의해 손해를 입은 개인을 보호하는 내용이 화제일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는 겁니다. 화제를 인식하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요.

**③~⑤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이를 위한 제도를 '국가배상 제도'라고 부릅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국가'가 개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는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판례로 도입된 이래 여러 나라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했겠죠? 우리나라는 '국가배상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에게 국가가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이 '공무원의 법을 위반한 직무 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손해를 봤다고 모두 배상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법률적인 직무 집행'을 했고, 그로 인해 손해를 봤을 때만 배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개념의 정의는 천천히 체크하면서 납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분명히 뒷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테니까요. 아무튼, 이러한 '국가배상'과 관련되어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기대하며 읽어봅시다.

**\*생각 심화\***

지문의 내용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국가배상 제도를 '법률'로 도입하지는 않고 그저 '판례'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제도를 '국가배상법'이라는 이름의 '법률'로 도입하고 있죠. 법 지문에서 이렇게 법에 명시되었는지 여부는 선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 적힌 것인지, 아니면 그냥 판례 혹은 관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정확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법인격 부인론' 지문에서도 출제되었던 요소예요.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를 받아들인다.

38.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법인격 부인론은 주식회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인식할 경우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좋은 태도가 될 수 있으니 알아두도록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⑤우리나라도 국가배상법을 제정하여 공무원의 법을 위반한 직무 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핵심이 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정의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뒷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2문단**

①법원이 하는 재판도 국가 활동에 속하는 이상 재판에 잘못이 있을 때 국가가 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②그러나 재판에는 일반적인 행정 작용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어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③그 특수성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④만일 법원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파악, 법령의 해석, 사실관계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 잘못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법원은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신껏 재판 업무에 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① #화제의 흐름**

이 '국가배상 제도'를 '재판'에 연결 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판'도 '국가 활동'이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재판=국가 활동'이라는 건 당연히 납득하면서도, '국가배상'이라는 큰 화제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② #비교/대조 #예외 제시**

그런데 재판은 일반적인 행정 작용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어 그 책임을 조금 제한해야 한다고 해요. 다시 말해, 무작정 배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는 '재판'이 가지는 '일반적인 행정 작용'과의 차이점이자, 지문 전체 내용과 어긋나는 일종의 '예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정보로 간주하며 처리해야겠죠?

**③~④ #카테고리 나누기 #재진술**

그렇다면 이렇게 법으로도 명시된 '국가배상'을 피할 수 있는 '재판'의 '특수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겠죠?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은 '법관의 직무상 독립'입니다.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법관의 특성상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이상으로 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할 법관이 배상을 안 할 수 있을 만한 판단만을 하게 된다면 당

연히 문제가 될 테니까요!

지문의 화제가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황', 즉 '재판'에 대한 이야기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법 지문에서 '예외'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몇 번이고 강조한 내용이지요? 재판이 가진 '특수성'이 이러한 예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화제의 흐름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생각 심화\***

두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건 배상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제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한되지 않는 상황', 즉 재판으로 인해 손해를 본 경우 배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 일까요? 지금까지 읽은 내용으로 충분히 답할 수 있습니다. 미리 생각해봅시다.

답은 바로 '법관이 법을 위반하여 재판한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경우에도 당연히 그러하다는 것이죠. 첫 문단에서 '국가배상법'의 정의를 정확히 체크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생각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재판의 특수성 때문에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대한 내용을 읽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법관이 법을 위반하면 배상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져 주셔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니까요!

**\*하이라이트 문장\***

②그러나 재판에는 일반적인 행정 작용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어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재판'이라는 내용으로 화제가 구체화되었다는 점, '특수성'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제시되었다는 점, '재판'이 결국 '예외'라는 점 등을 모두 생각할 것을 요구하는 문장입니다. 가볍게 해낼 수 있어야 해요.

**3문단**

①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확정 판결에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도 재판의 특수성의 하나이다. ②기판력은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되거나 최상급 법원의 판단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가 이에 저촉되는 청구를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결을 할 수 없게 되는 구속력을 의미한다. ③이는 부단히 반복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일점 시점에서 사법권의 공적 권위로써 확정하여 법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④만약 일단 기판력이 생긴 확정 판결을 다시 국가배상 청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①~② #카테고리 나누기 #단어의 의미 살리기 #정의 제시**

재판이 가진 또다른 특수성으로 '기판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6 학년도 수능에서도 만나 본 개념이니, 그 정의를 납득하는 게 어렵지는 않겠지요? 핵심은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 판단을 뒤집는 것을 불가능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하게 하는 구속력이예요. 이때 '판결 확정'의 방법에는 '당사자 불복', '최상급 법원 판결'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도록 합시다.

이러한 '기판력'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적/안정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듯이, 법적 분쟁이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여 '법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③~④ #화제의 흐름 #재진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기판력'이 결국 '재판'이 '국가배상'의 예외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제시되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예요. 화제의 흐름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만약 기판력이 생긴 확정 판결에 '국가배상 청구'를 허용한다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던 법적 질서가 또 흔들리게 되겠지요.

계속해서 '국가배상 제도'에서의 '예외'인 '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법 지문의 핵심은 결국 '예외'라는 것! 잊지 않았죠?

**4문단**

①재판에는 심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특수성으로 볼 수 있다. ②심급 제도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상위 등급의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③소송 당사자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불복 절차에 따라 상급심에서 법원의 업무 수행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여 하급심의 잘못된 결과를 시정할 수 있다. ④심급 제도와 다른 방식으로 잘못된 재판의 결과를 시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넓게 인정하면 심급 제도가 무력화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① #카테고리 나누기**

또 다른 '특수성'으로 '심급 제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심급 제도' 정도는 기본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심급 제도' 역시 '재판'이 '국가배상'의 예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특수성'이라는 걸 인지하는 것이겠지요?

**②~④ #정의 제시 #재진술**

아무튼, 소송 당사자는 이렇게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불복 절차'에 따라 재판의 결과를 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급 제도와 다른 방식으로 재판의 결과를 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를 인정해버리면, 기판력에 대한 설명에서 이야기했듯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니까요!

**⑤ #화제의 흐름**

그리고 이때의 '다른 방식'에는 당연히 '국가배상'도 포함됩니다. 재판에 '국가배상'을 인정해버리면, 이는 기존의 심급 제도에 또 한 번의 판단 기회가 더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속해서 '재판'이 '국가배상'의 '예외'라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생각 심화\***

여기서 다루지는 '기판력'과 '심급 제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번에도 미리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지문에서 '기판력'과 '심급 제도'는 기본적으로 '재판'의 특수성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제시된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맨

처음 제시된 '법관의 직무상 독립'과도 공통된 요소예요. 그런데 '법관의 직무상 독립'과 '기관력/심급 제도'가 구분되는 부분은 바로 '법적 안정성'입니다. '법관의 직무상 독립'과는 달리, '기관력'과 '심급 제도'는 모두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때 '법관의 직무상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하여 보장하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열되는 대상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주는 것은, 체감되는 정보량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런 태도가 자연스러워지면 좋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⑤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넓게 인정하면 심급 제도가 무력화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지문이 조금만 더 어려워진다면 없어질 문장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서 '심급 제도' 역시 '법적 안정성'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속한 정보라는 걸 인식해야 해요. 어렵지 않죠?

**5문단 (1)**

①독일에서는 법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형사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②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에는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③따라서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법의 적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④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를 좁히고 있다. ⑤먼저, 대법원은 비록 확정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위법성을 인정한다. ⑥보물을 받고 재판한 것과 같이 법관이 법을 어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소를 제기한 날짜를 확인하지 못한 것과 같이 법관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법적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을 때가 이에 해당한다. ⑦따라서 법관이 직무상 독립에 따라 내린 판단에 대하여 이후에 상급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③ #화제의 흐름 #비교/대조 #재진술**

갑자기 '독일의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황할 필요 없어요. '재판에 적용되지 못하는 국가배상 책임'이라는 화제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독일에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법관에게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독일의 법'은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네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선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법에 안 된다고 명시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이 지문의 대전제가 깨지는 것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④~⑥ #화제의 흐름 #사례-원리 연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대법원은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를 좁히고 있습니다. '법관'이 진짜 잘못된 경우에만 재판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재판의 위법성을 인정한다는 건 '국가배상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뇌물', '직무 수행 관련 법적 기준 위반' 등이 그 사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2문단의 생각 심화에서도 언급했던 대로, 결국 '법관이 법을 위반하여 재판하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경우'에는 배상이 가능했던 거예요! 완벽하게 납득할 수 있죠?

**⑦ #재진술 #화제의 흐름**

이런 식으로 제시되면 '국가배상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 집중하면서 읽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 지문은 결국 '국가배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 다음 문장, '상급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 즉 이 지문의 화제는 이 내용이기 때문!

**\*하이라이트 문장\***

⑦따라서 법관이 직무상 독립에 따라 내린 판단에 대하여 이후에 상급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배상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읽으면서도, 결국 이 지문의 화제는 '배상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니까요.

**5문단 (2)**

⑧그리고 대법원에 따르면,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⑨불복 절차를 따르지 않은 탓에 손해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⑩단,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자체가 법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⑧~⑩ #카테고리 나누기 #재진술**

여기에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가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국가배상 제도'보다 먼저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이 '재판의 '국가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를 좁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인 것이죠? '법관의 명백한 잘못'과 '불복 절차 우선'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나눠주셔야겠네요.

이렇게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여기서의 '불복 절차'가 위에서 나온 '심급 제도'와 비슷한 내용이라는 것은 쉽게 체크하고 있겠죠? 개념의 정의, 그리고 그 역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가능해요!

**⑩ #예외 제시**

물론, 예외적으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법관 때문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네요. 역시 당연한 이야기죠? '법관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이 가능하다고 몇 번이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7%	70%	8%	6%	9%

2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②

①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국가배상 제도가 법률로 도입되었다.

명시적 근거	1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프랑스는 판례로만!
해설	프랑스는 국가배상 제도를 판례로만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법에 명시되었는지 여부는 언제든지 선지화될 수 있는 부분이니, 미리 체크하도록 합시다.

② 최하위 등급의 법원이 한 판결도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5문단 10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법 어겼으면 배상할 수 있지.
해설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은 마지막 문단에서 열심히 체크한 ‘예외’에 해당하는 정보입니다. 그 예외는 바로 ‘법관의 잘못’이 있을 때였어요! 그럼 최하위 등급의 법원이 한 판결이라도 법관이 뇌물을 받거나 하는 등의 잘못을 했다면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예외’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는 선지였습니다. 바로 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해요!

③ 사실관계 파악은 법관의 직위가 아니므로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이 아니다.

명시적 근거	2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실관계 파악이 왜 법관의 직위가 아니냐. 제일 중요한 건데.
해설	‘사실관계’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대해 설명할 때 나온 개념이에요. 법관의 직위가 아니라는 건 말도 안 되겠죠. 본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냥 답으로 골라버리는 우를 범하지 맙시다.

④ 독일은 판례를 통해서만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를 제한한다.

명시적 근거	5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독일은 법으로 도입했다고 했지.
해설	‘독일’은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 즉 법으로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의 제한을 명시하지 않은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가져 온 정보였습니다. 독일에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했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⑤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한다.

명시적 근거	5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우리나라는 법에 명시 안 되어 있다고 했지.
해설	계속해서 ‘법에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배상법에 ‘재판’의 국가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기에, ‘우리 대법원’은 여러 방법을 통해 재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제한한다고 했어요. 이 내용을 마지막 문단에서 계속 설명했었죠? 마지막 문단을 읽을 때 ‘해야 할 생각’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10%	13%	60%	9%	8%

21. ㉠의 입장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 우리 대법원

-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법관이 법을 어겼을 때’만 배상할 수 있다! 이 대원칙 하나를 잡아 둔 상태로 문제 풀어봅시다.

① 국가배상 청구가 심급 제도를 대체하는 불복 절차로 기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명시적 근거	4문단 1번~2번 문장, 5문단 8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심급 제도 같은 게 있으니 국가배상이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
해설	재판에는 ‘심급 제도’라는 특수성이 있기에 ‘국가배상 제도’가 제한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국가배상 제도’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지문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던 내용이었네요.

②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해자의 권리를 법적 안정성의 유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허용한다.

명시적 근거	5문단 9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법적 절차 안 거렸으면 배상 못 해준다고 했지.
해설	‘심급 제도’와 같은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국가가 ‘국가배상 제도’를 통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또한 ‘심급 제도’는 ‘기판력’과 함께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였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라는 건 ‘배상받을 권리’를 의미할 텐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권리는 희생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배상이 불가능하니까요!  ‘법적 절차’, ‘피해자의 권리’와 같은 지문에 없던 말들이 사실은 지문의 특정 내용을 재진술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선지는 지문의 재 진술이니가요.
--	--

- ③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면 그 확정 판결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명시적 근거	5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법 어겼으면 배상해야지.
해설	우리가 열심히 체크한 '예외'를 무시하는 선지네요. '기판력'이 있는 확정 판결이라도 '법관의 법 어김'이라는 예외 상황에서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선지의 내용이 '원칙'이지만, '예외'를 배제하지 않았기에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예요. '예외'에 대한 인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겠지요?

- ④ 법관이 법을 어기면서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위법성을 인정한다.

명시적 근거	5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법 어겼으면 배상해야지.
해설	계속해서 '법관이 법을 어기며 재판한 경우'라는 예외 상황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볍게 지을 수 있는 선지이지만, '예외'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면 근거를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 ⑤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위해, 판결에 나타난 법관의 법령 해석이 상급 법원의 해석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재판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명시적 근거	2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법관의 직무상 독립'과 '심급 제도'라는, 재판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선지네요.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죠?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저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7%	10%	3%	72%	8%

22. <보기>의 사례에 대한 아래의 판단 중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④

- 법 지문에서 <보기>에 사례가 제시되면, 지문에 나온 개념을 <보기>에 대응시키며 정리해야만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A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A는 적법한 청구 기간 내인 1994년 11월 4일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서에 찍힌 접수 일자를 같은 달 14일로 오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청구 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A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A는 위 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었다. A는 법을 위반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1997년에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를 하였고, 2003년에 이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 천천히 정리해봅시다. 먼저 A의 청구에 대한 1994년의 판결은 명백한 법관의 잘못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접수 일자를 착각했다는 것은 '법관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법적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입니다. 즉, 국가배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가배상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이를 바로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역시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이 가능하게끔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행히 1997년에 국가배상 청구를 하였고, 2003년에 이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 판결은 당연히 '국가배상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이겠죠? 이 내용 잡고 선지 판단해봅시다.

- ㄱ. 법관의 직무상 독립 보장만을 이유로 이 사건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명시적 근거	5문단 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잘못했으면 배상해야지.
해설	'법관'이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법적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판결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국가배상 책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리 생각한 내용 그대로네요.

- ㄴ. 법원은 A의 심판 청구서가 적법한 청구 기간 내에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다고 보아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5문단 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법관이 착각한 거니까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지.
해설	ㄱ과 똑같은 선지죠? 재판관들이 모두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A의 심판 청구서가 적법한 청구 기간 내에 제출되었다고

판단하여 '국가배상'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예요.

- ㄷ. 1997년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A의 국가배상 청구는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불복 절차 없어서 못한 거니까 나중에라도 국가배상 해 줘야지.
해설	1997년에는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A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었고, 이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네요.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불복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니까요.

####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③ 카테고리 나누기 : 지문의 흐름 및 설명 대상이 바뀌는 느낌이 들면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를 각자의 카테고리에 맞춰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④ 예외 인식 : 특히 법 지문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예외'는 중요하게 다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제의 전반적 흐름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합시다.

#### \*지문 내용 총정리\*

법 지문의 전형인 '예외 활용'을 잘 보여 주는 지문입니다. '국가배상 제도'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예외'로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진 '재판'을 제시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 문단에서는 '재판에서는 국가배상 책임이 제한된다.'라는 원칙 속에서 '법관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예외'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법 지문에서는 '예외'를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예외인지 정확히 따지는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합시다.

**4주차 <인문 제재의 지문 읽기>**

2009예비LEET [5~7] 인문 '호르크하이머' ☆☆☆☆

**1문단**

①계몽된 현대 사회에서 이성이 설정한 최고의 목적은 '자기 보존'이다. ②그 결과 자연은 목적 없는 단순 물질이자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③오랫동안 자연의 지배를 받아 왔던 인간이 이제 자연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④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성 자체가 도구화됨으로써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자기는 사라지고 오직 비판 능력 없는 추상적 자아만 보존된다. ⑤호르크하이머는 이렇게 진행된 인간의 승리가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귀결된다고 진단한다. ⑥이를 개념화하기 위해 그는 우선 내적 자연과 외적 자연을 구별하고 후자를 다시 인간적 자연과 비인간적 자연으로 나눈다.

**①~③ #화제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현대 사회는 계몽되었는데,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이성이 설정한 최고의 목적은 '자기 보존'이라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이성이라는 '자기를 '보존'하는 것이 이성이 설정한 최고의 목적이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이성이 '자기 보존'을 목적으로 삼자, 자연은 목적 없는 단순 물질이자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이성과 달리 자연은 자기 스스로를 보존하려는 목적 의식이 없을 뿐 아니라, 이성이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게 된 모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성'이 '인간'에 대응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이성이 자연을 수단으로 사용하며 자기를 보존하려 애쓴다는 것이예요.

**④ #재진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성 자체는 도구화됩니다. 이성이 스스로를 '자기 보존'이라는 목적만을 위해 달려가는 도구처럼 사용하게 되고, 이에 이성을 가진 자아는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어휘들에 정신을 잃지 말고, 차분하게 읽어 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모습이 사라진 채 '자기 보존'이라는 목적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아는 비판 능력을 가지지 못한 '추상적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⑤~⑥ #주장 제시 #재진술 #화제 제시 #카테고리 나누기**

'호르크하이머'라는 사람은 이러한 인간의 승리, 즉 자연에 대한 이성의 지배가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귀결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를 개념화하기 위해 그는 자연을 내적/외적인 것으로, 그리고 외적 자연을 인간적/비인간적인 것으로 나누었다고 해요. 이제부터 이 지문은 '자연'이라는 개념에 대한 '호르크하이머'의 구분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네요. '내적/외적 자연', '인간적/비인간적 자연'이라는 카테고리 나눠질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이를 통해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라는 '호르크하이머'의 주장을 이해할 준비를 하면서 읽어 보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⑤호르크하이머는 이렇게 진행된 인간의 승리가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귀결된다고 진단한다.

화제를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라는 '호르크하이머'의 주장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겠다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읽을 수 있어야 해요.

**2문단**

①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가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진행된다는 호르크하이머의 명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②먼저 인간에 의한 외적 자연 지배는 내적 자연에 대한 억압을 수반한다. ③인간은 외적 자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내면화하면서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해야 하기 때문이다. ④인간은 자연을 기계처럼 다루듯이 자기 자신도 도구적 이성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처럼 다루어야 한다. ⑤도구적 이성으로 무장한 자아가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는 것이다. ⑥그런데 내적 자연을 철저하게 억압함으로써 성공한 사람이 이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배한다.

**① #화제의 흐름**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호르크하이머'의 주장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겠다는 친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없어도 당연히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②~③ #단어의 의미 살리기 #정의 제시 #재진술**

먼저 인간에 의한 '외적 자연' 지배는 '내적 자연'에 대한 억압을 수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외적 자연'과 '내적 자연'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생각해야 해요.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은 채 해당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니, 단어의 의미를 살리고 맥락을 고려해서 스스로 정의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단, 3번 문장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는 과정을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내면화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내적/자연'이 내적인(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내면화'한 것) 자연이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지문에서 '자연'은 동·식물의 의미뿐만 아니라 도구적 이성에 의해 지배받는 존재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맥락에서 '외적 자연'에 '인간적 자연' 및 '비인간적 자연'이 있다는 1문단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적 자연'은 타인, '비인간적 자연'은 기타 동·식물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④~⑤ #재진술**

인간은 마치 자연을 기계처럼 다루듯이, 자기 자신의 '내적 자연'도 도구적 이성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처럼 다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도구적 이성으로 무장한 자아가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었네요. 이성이 '자기 보존'이라는 목적을 위해 추상적인 자아를 조종하고, 이를 내면화한 자아가 '내적 자연'을 억압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⑥ #재진술 #화제의 흐름**

그런데 '내적 자연'을 철저하게 억압함으로써 성공한 사람이 이제는 그

렇지 못한 사람을 지배한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호르크하이머’가 주장하는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생각하면, 인간이 자기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욕구를 통제하며 성공하고자 애쓰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욕구를 통제하며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 즉 ‘외적 자연’이자 ‘인간적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지배’라는 표현이 조금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성공한 사람이 상급자가 되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사회적·경제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이라이트 문장\***

⑥ 그런데 내적 자연을 철저히 억압함으로써 성공한 사람이 이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배한다.

앞에 나왔던 정보들은 결국 이 한마디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 지문의 화제와 맞닿아 있는 주장이기에, 확실하게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해요.

**3문단**

① 추상적 자아에 의한 내적 자연의 지배가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 구조를 강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의 지배 구조가 자아에게 내적 자연을 지배하도록 강제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자기 보존과 성공을 위해 인간이 자신의 내적 자연까지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냉혹한 지배자로부터 혹사당한 경험에서 벗어나려는 비극적 몸부림이기 때문이다. ③ 이처럼 내·외적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억압은 인간의 본래적 특성보다는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①~② #주장 제시 #재진술**

추상적 자아에 의한 ‘내적 자연’의 지배가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 구조를 강화한다는 것은 앞에서 이해한 바와 같습니다. ‘내적 자연’을 철저히 통제된 사람이 ‘강자’가 되어 그렇지 못한 ‘약자’를 지배한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의 지배 구조가 추상적 자아에게 ‘내적 자연’을 지배하도록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해요. ‘내적 자연’ 지배에 실패하면 냉혹한 지배자로부터 혹사당한 과거의 경험이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에, 즉 ‘사람들 사이의 지배 구조’에서 피지배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내적 자연’을 억압하여 성공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죠. ‘호르크하이머’가 보기에는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는 꽤나 오래된 역사적 흐름인가 봅니다.

**③ #재진술**

이처럼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거나 ‘외적 자연’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래적 특성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지배 구조라는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인간들 사이가 지배-피지배 구조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피지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 ‘자연’을 억압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4문단**

① 호르크하이머에 따르면 외적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 인간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억압의 주체인 이성과 자아에 대한 원한 감정을 더 키워 간다. ② 특히 이중적 억압의 희생자로 전락한 다수의 대중이 원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③ 대

상성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중은 한편으로 자신의 자연적 충동을 스스로 억압해야만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다 성공적으로 내적 자연을 통제된 사람들에게 의해 지배받는다. ④ 이와 같이 억압받은 대중의 내적 자연이 억압의 주체인 도구적 이성에 대해 품은 원한 감정은 폭동의 잠재력이 된다. ⑤ 일반적으로 원한 감정은 그것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파괴 욕구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⑥ 원한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듯 타인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폭동을 일으킨다. ⑦ 호르크하이머는 이를 ‘자연 폭동’이라고 부른다. ⑧ 자연 폭동의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 ⑨ 파괴적 공격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할 수도 있고 처음 본 사람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⑩ 파괴의 대상은 이처럼 언제나 대체 가능하지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① #주장 제시 #재진술 #단어의 의미 살리기**

‘호르크하이머’에 따르면, 이처럼 사람들 사이의 지배 구조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억압의 주체인 이성과 자아에 대한 ‘원한 감정’을 더 키워 간다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자신을 억압하는 이성과 자아에 대해 ‘원한’의 ‘감정’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②~③ #단어의 의미 살리기 #정의 제시 #재진술**

이러한 ‘원한 감정’은 특히 ‘이중적 억압’의 희생자로 전락한 다수의 대중들이 사로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연적 충동, 즉 ‘내적 자연’을 스스로 억압해야만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다 성공적으로 ‘내적 자연’을 통제된 사람들에게 의해 지배받아야 하기에 ‘이중적’ 억압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이중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왜 사람들이 ‘원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지 납득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서 ‘내적 자연’이 ‘자신의 자연적 충동’으로 정의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던 ‘내적 자연’에 대한 우리의 추론이 맞아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네요.

나아가, 이로부터 사람들이 키워 가는 ‘원한 감정’의 대상인 ‘이성’과 ‘자아’가 ‘내적 자연’을 억압하려는 자신의 도구적 이성·추상적 자아를 의미하기도 하면서, ‘내적 자연’을 억압하는 데 성공하여 나를 지배하는 ‘인간적 외적 자연’ 전체를 통칭하는 ‘이중적’인 개념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사실상 같은 말임을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네요.

**④~⑦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이러한 대중들의 ‘원한 감정’은 폭동의 잠재력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한 감정’은 도구화된 이성을 바꾸는 식으로 어렵게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폭동’이라는 파괴 욕구로 발전하기 때문이죠.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지요? 원래 사람들은 어려운 해결책보다는 쉽고 눈앞에 보이는 해결책에 더 끌리기 마련이니까요. ‘호르크하이머’는 이를 ‘자연 폭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폭동’이라는 식으로 납득할 수도 있겠고, ‘자연’에 대한 억압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식으로 납득할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그 의미를 ‘납득’하는 것 자체입니다.

**⑧~⑩ #재진술**

이러한 ‘자연 폭동’의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를테면 가족을 향할 수도 있고 처음 본 사람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고 해요. 전자는 ‘폭동’보다는 가족 내의 심각한 다툼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고, 후자는 진짜 일종의 테러 형태의 ‘폭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파괴의 대상은 이처럼 언제나 대체 가능하지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 수가 적은 이들이 '폭동'의 타겟이 되기 쉽다는 건 어느 정도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④이와 같이 억압받은 대중의 내적 자연이 억압의 주체인 도구적 이성에 대해 품은 원한 감정은 폭동의 잠재력이 된다.

'이중적 억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원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과정, 나아가 이것이 '폭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납득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독해의 목표가 돼야 해요.

**5문단**

①호르크하이머는 여기서 현대의 파시즘이, 대중이 품고 있는 자연 폭동의 잠재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②그에 따르면 현대적 파시즘은 내·외적 자연을 억압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체제에 자연 폭동의 잠재력을 포섭함으로써 보다 철저하게 대중을 착취한다. ③예를 들어 나치는 도구적 이성에 의해 희생된 대중들이 가진 이성에 대한 원한 감정을 유대인을 향한 자연 폭동으로 이끌어 낸 것이다. ④그러나 자연 폭동은 억압된 자연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을 영속시키는 데 기여했다. ⑤도구적 이성의 전면에 대항하는 자연적 인간들의 야만적 폭동은 표면적으로는 이성을 비하하고 자연을 순수한 생명력으로 추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성의 도구화를 촉진하였으며 내적 자연을 잔혹한 폭력의 주체로 발전시켰다. ⑥이런 맥락에서 호르크하이머는 반이성적 자연 폭동은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본다. ⑦이성을 거부하는 자연 폭동은 자연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족쇄를 채우는 데 이용될 뿐이기 때문이다. ⑧족쇄에서 벗어나려면 반이성적 자연 폭동에 의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자연의 대립물인 이성이 먼저 비판적 사유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①~③ #주장 제시 #재진술 #사례-원리 연결**

호르크하이머는 현대의 파시즘이 '자연 폭동'의 잠재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자기 자신의 체제에 '자연 폭동'의 잠재력을 포섭함으로써 보다 철저하게 대중을 착취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파시즘의 대표적인 나치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는 도구적 이성에 의해 희생된(독일) 대중들이 가진 '원한 감정'을 유대인을 향한 '자연 폭동'으로 이끌어 '나치즘'이라는 자기 자신의 체제에 포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중적 억압'의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폭동'의 잠재력을 파시즘이라는 체제의 것으로 포섭하여 유대인과 같은 '외적 자연'에 대한 폭력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④~⑤ #재진술**

그러나 자연 폭동은 '원한 감정'에 빠진, 억압되어 있는 '내적 자연'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을 영속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 '호르크하이머'의 주장입니다. 도구적 이성의 전면에 대항하는 자연적 인간들, 즉 '자신의 자연적 충동'인 '내적 자연'을 마음껏 분출한 인간들의 야만적 폭동은 결과적으로 '이성의 도구화'를 촉진하였으며 '내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적 자연'을 잔혹한 폭력의 주체로 발전시켰습니다. 자신의 이성이 비판 능력 없이 도구화되는 것을 오히려 촉진했을 뿐 아니라, '자연적 충동'을 고작 잔혹한 폭력의 주체로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⑥~⑧ #주장 제시 #재진술**

이런 맥락에서 '호르크하이머'는 반이성적 '자연 폭동'은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죠? '내적 자연'을 해방시키기 위해 '자연 폭동'을 일으켜도, 이는 결국 해방은커녕 파시즘과 같은 새로운 도구적 이성의 '자기 보존'을 위한 족쇄를 채우는 데 이용될 뿐입니다.

이러한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이성적 '자연 폭동' 같은 방법이 아니라 이성이 나서야 합니다. '내적 자연'의 대립물이기에 대항해야 할 존재처럼 보이는 이성에 적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먼저 '비판적 사유'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 심화\***  
여기서 '비판적 사유'라는 말을 보고서 1문단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1문단에서는 '이성 자체가 도구화'됨으로써 '비판 능력 없는' 추상적 자아만 보존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성'이 먼저 '비판적 사유'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호르크하이머'는 '이성'이 더 이상 '도구'가 아닌 '주체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판'이라는 '진짜로' 같은 말이 활용되었음을 바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법한 생각이예요.

어쨌든, '호르크하이머'가 제시한 이러한 방법은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의 원인이었던 '사람들 사이의 지배 관계'에 대한 자각이자, '파괴 욕구의 분출'이 아닌 '원인의 제거'를 통해 '원한 감정'을 잠재우는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호르크하이머'의 주장을 이해했다면 완벽하게 읽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이라이트 문장\***

⑧족쇄에서 벗어나려면 반이성적 자연 폭동에 의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자연의 대립물인 이성이 먼저 비판적 사유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사실상 이 지문의 내용을 전부 품고 있는 문장입니다. '호르크하이머'가 말하고자 하는 해결책이 결국 '이성'의 각성, 나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에 대한 '이성'의 자각이라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5. 윗글의 '자아', '이성', '자연'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㉔

- 이 지문의 핵심 개념 세 가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토대로 가법게 문제를 해결해봅시다.

① 외적 자연은 추상적 이성과 자아를 가지고 있다.

명시적 근거	1문단 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비인간적 자연도 있잖아?
해설	일단 '외적 자연'에는 이성과 자아를 갖지 않는 '비인간적 자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여기서 '추상적 이성'이라는 말이 지문에 등장하지 않아 애매한데, 1문단에서 '추상적'이라는 말을 '비판 능력 없는'으로 정의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곧 '도구화된 이성'의 성질이었으니 계몽된 현대 사회의 '인간적 자연'은 '추상적 이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② 나에게 다른 사람은 외적 자연이면서 인간적 자연이다.

명시적 근거	1문단 6번 문장, 2문단 2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외적 자연이면서 인간적 자연이 곧 타인이지.
해설	'외적 자연'에는 '인간적 자연'과 '비인간적 자연'이 있는데, 이것은 각각 각각 타인과 기타 동·식물을 의미했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다른 사람(타인)은 '외적 자연'이면서 '인간적 자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명시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단어의 의미와 맥락을 바탕으로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체크했는지 묻는 선지였습니다.

③ 나는 자아가 없는 내적 자연으로서 기계적으로 살아간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아가 왜 없어.
해설	계몽된 현대 사회의 인간인 '나'는 '내적 자연'이라는 충동성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아'가 없지는 않죠? 비록 비판 능력을 상실한 기계와 같은 '추상적 자아'이기는 하지만, '자아' 자체가 없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 과거에 자연이었던 것이 이제는 자연이 아니며 자아도 아니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뭔 소리야?
해설	완전 헛소리죠? '자연'이라는 지위를 박탈당하는 모습은 지문에서 아예 언급된 적도 없는 내용입니다.

⑤ 내적 자연이 자아를 지배한다면 외적 자연은 이성을 억압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연은 억압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였지.
해설	그렇듯해 보이지만 완전히 틀린 말이지요? 이 지문의 핵심은 '도구적 이성'이 추상적 자아를 지배하고, 그 지배를 내면화한 추상적 자아가 '내적 자연'을 억압하고, 이러한 억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이 '외적 자연'을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억압의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아', '이성', '자연'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선지였어요.

6. 윗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㉔

①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는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의 또 다른 형태이다.

명시적 근거	1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 지문의 핵심이지.
해설	인간이 '도구적 이성'을 바탕으로 자연에게 승리를 거둔 것이 결과적으로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귀결된다는 내용, 이 지문의 핵심입니다. 가법게 지워낼 수 있어야 해요.

② 자연적 욕망을 강하게 억제함으로써 성공한 사람은 원한 감정을 갖지 않는다.

명시적 근거	4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원한 감정은 내적 자연을 억압하면 할수록 커지는 것인데?
해설	사람들의 '원한 감정'은 자연적 욕망, 즉 '내적 자연'을 강하게 억압하면 할수록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억제하는 데 성공한 사람도 '원한 감정'을 걸로 표출하지 않을 뿐(성공한 사람 입장에서 폭동을 일으킬 이유가 없으니까요.) '원한 감정' 자체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엄밀하게 설명하자면, 애초에 지문에서 '원한 감정'을 갖지 않는 경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으니(지문 속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니)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수능에선 이런 식의 선지 구성을 거의 하지 않으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③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이 인간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미화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5문단 5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연 폭동은 겉으로는 자연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지.
해설	‘호르크하이머’는 ‘자연 폭동’이라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이, ‘자연’이라는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미화될 수 있으나 결국 ‘자연’에 족쇄를 채우는 데 이용될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확실하게 납득했던 내용이지요?

④ ‘자연 폭동’은 전체주의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의 권력을 강화한다.

명시적 근거	5문단 1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자연 폭동’은 ‘나치즘’과 같은 전체주의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그 체제에 포섭되어 억압을 영속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3번 선지와 유사한 내용으로 납득했던 것이죠? 5문단에서 전반적으로 ‘자연 폭동은 바람직한 결과를 낳지 못한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인식했다면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을 거예요.

⑤ 내적 자연을 통제하는 데 실패한 현대인은 외적 자연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명시적 근거	2문단 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
해설	첫 문단에서부터 화제로 잡았던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의 양상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선지입니다. 완벽하게 납득했던 내용이니, 보자마자 답으로 골라낼 수 있어야 해요.

7. 윗글에 제시된 ‘호르크하이머’의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 타당한 것은? ①

- 비판 문제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호르크하이머’의 주장을 공격하는 선지를 찾으면 돼요. ‘호르크하이머’가 정말로 한 적 있는 말을 제대로 공격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 봅시다.

① 이성이 비판 능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하면서 이성의 비판적 활동에서 희망을 찾는 것은 이미 사라진 것을 있다고 가정하는 자기 모순이다.

명시적 근거	1문단 4번 문장, 5문단 8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생각해 보니 그러네.

명시적 근거	‘호르크하이머’는 계몽된 현대 사회에서 이성이 도 구화되어 ‘비판 능력 없는’ 추상적 자아만 보존시켰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이성이 비판 능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한 것으로 볼 수 있죠?
해설	그런데 ‘호르크하이머’는 마지막 문단에서 ‘원한 감정’의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이성이 ‘비판적 사유’를 통해 ‘사람들 사이의 지배 관계’를 자각하는 것을 제시했어요. 이는 이미 사라졌다고 말한 이성의 비판 능력을 있다고 가정하는 자기 모순이라고 할 수 있으니, 적절한 비판이네요. 이런 생각을 미리 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호르크하이머’의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이 적절한 비판이라는 것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② 개인적인 심리적 병리 현상으로부터 사회적 억압 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개별을 보편으로 성급하게 환원시키는 일반화의 오류이다.

명시적 근거	지문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개인적인 심리적 병리 현상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데 무슨.
해설	‘호르크하이머’는 철저하게 ‘사람들 사이의 지배 관계’라는 ‘사회적 억압 구조’에 의해 ‘원한 감정’과 같은 심리적 병리 현상이 나타난다고 봤습니다. ‘개인적’인 심리적 병리 현상으로부터 ‘사회적’ 억압 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호르크하이머’의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격하는 것은 적절한 비판이라고 할 수 없겠네요.

③ 자연을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도구적 이성에 대한 비판은 자연 중심 사상을 가지고 이성을 격하하는 자기 기만이다.

명시적 근거	지문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호르크하이머가 자연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지.
해설	‘호르크하이머’가 자연을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도구적 이성에 대해 비판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자연’을 ‘중심’에 두는 ‘자연/중심/사상’을 바탕으로 주장을 전개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 폭동’이라는 문제점의 해결책을 이성의 비판적 활동에서 찾는 등의 모습을 보였지, ‘자연’을 ‘중심’에 두는 ‘사상’을 펼친 적은 없어요. 따라서 ‘자연 중심 사상’을 가지고 이성을 격하하는 자기 기만기에 틀렸다는 것은 호르크하이머 주장의 근거를 제대로 공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④ 인간이 자연을 억압한다는 주장은 자연이 기계처럼 작용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명제를 가정한 허구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인간이 자연을 억압하기 때문에 자연이 기계처럼 작용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야.
해설	<p>굉장히 어려운 선지입니다. 일단 '인간이 자연을 억압한다는 주장', 그리고 '자연이 기계처럼 작용한다는 명제'는 모두 '호르크하이머'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외적 자연'을 억압하는 구조를 가정했을 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내적 자연'을 기계처럼 작동시키며 억압한다고 했으니까요.</p> <p>하지만 '호르크하이머'는 선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연이 기계처럼 작용한다는 명제를 가정한 뒤 '인간이 자연을 억압'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인간이 자연을 억압'한다는 가정하에 '자연을 기계처럼 작용시킨다'는 주장을 한 것이죠. 이처럼 잘못된 선후관계를 기반으로 비판을 한 것이기에 옳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선후관계가 뒤바뀌었다는 건, '호르크하이머'가 한 적 없는 말을 가지고 비판한 것이나 다름 없으니까요!</p>

⑤ 자연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이 자연을 억압한다는 비판은 '계몽'이라는 논점에서 이탈하고 있다.

명시적 근거	2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연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이 자연을 억압하는 게 아니지.
해설	'호르크하이머'는 '내적 자연'을 성공적으로 억압한 인간이 '외적 자연'을 억압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지, '자연'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이 자연을 억압한다는 주장을 펼친 적이 없습니다. '계몽'이라는 논점에서 이탈했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애초에 '호르크하이머'가 한 적 없는 말을 비판하고 있으니 답이 되기 어렵죠?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어려운 어휘가 남발되고, 정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개념어가 사용되며,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어 처리하기가 힘든 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사람은 한마디만 한다는 인문 지문의 대원칙을 지키는 지문이기도 했죠? '호르크하이머'라는 사람의 한마디를 정확하게 이해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재진술을 인식하며 읽었는지를 돌아보면서 복습해보시기 바랍니다.

**4주차 <경제 제재의 지문 읽기>**

2014LEET [1~3] 사회(경제) '금융 위기의 원인' ☆☆☆

**1문단**

①지난 2008년의 미국발 금융 위기와 관련해 '증권화'의 역할이 재조명되었다. ②**증권화**란 대출채권이나 부동산과 같이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자산을 시장성이 높은 유가증권으로 전환하는 행위이다. ③당시 미국의 주택담보 대출기관, 곧 모기지 대출기관들은 대출채권을 유통화해 이를 투자은행, 헤지펀드, 연기금, 보험사 등에 매각하고 있었다. ④이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모기지 유통화 증권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누어 들어올 현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었고,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광범위한 투자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었다. ⑤증권화는 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금융 혁신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①~② #화제 제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2008년의 미국발 금융 위기와 관련해, 대출채권·부동산 등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자산을 시장성이 높은 유가증권으로 전환하는 행위인 '증권화'의 역할이 재조명되었다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증권(권리의 증서로, 거래가 쉽다는 특징을 가져요.)'으로 바꾸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쉽게 말해서 '현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계속 읽어봅시다.

**③~④ #재진술 #단어의 의미 살리기**

당시 미국의 모기지 대출기관들은 대출채권을 유통화해서, 즉 유가증권으로 전환해서 여러 기관에 매각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유통화'가 '유가증권으로 전환'과 같은 말로 쓰인 것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초에 '증권화'라는 상황 속에서 제시된 상황이기도 하고, 유가증권의 정의인 '시장성이 높다'는 것이 곧 '유통화하기 쉽다'와 비슷한 말이니깐요.

모기지 대출기관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모기지 유통화 증권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누어 들어올 현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유가증권'은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해할 수 있듯이 가격이 있는(有) 증권을 의미하기에, '유가증권을 여러 기관에 매각하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문의 서술에 따르면, 이때의 현금 은 일시불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누어 받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은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아가 모기지 대출기관들은 원리금(원금+이자)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광범위한 투자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 모기지 대출기관은 '주택담보 대출'기관입니다. 즉,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기관이기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채권'은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채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기출문제에서 제시되었듯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원리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출채권'을 '유가증권'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그 '대출채권'에 '유가증권'을 통해 투자한 투자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해당 투자자들은 주택담보 대출의 '대출채권'으로부터 원리금을 받을 기대를 하고 투자했다고 볼 수 있는데, 모기지 대출기관들은 이러한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전가한 것입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원리금을 성실하게 상환하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최대한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함께 '결국, 다 같은 말'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예요.

**⑤ #재진술 #화제의 흐름**

이러한 '증권화'는 금융 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그리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금융 혁신으로 높게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대출채권'의 리스크를 모기지 대출기관뿐 아니라 채권 투자자들이 나눠 가지게 되고,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제공되는 혁신이었던 것이죠.

지문의 서술에 따르면 이러한 관점은 금융 위기 이후 무너졌을 것입니다. '증권화'가 미국발 금융 위기를 일으키는 데 원인이 되었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화제의 흐름을 예상한 상태로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④이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모기지 유통화 증권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누어 들어올 현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었고,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광범위한 투자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었다.

어렵다고 해서 이런 문장의 납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결국 다 같은 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대한 납득하면서 넘어가야 해요.

**2문단**

①하지만 금융 위기가 일어나면서 증권화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었다. ②당시 모기지 대출기관들은 대출채권을 만기 때까지 보유해야 한다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남에 따라 대출 기준을 완화했다. ③이 과정에서 신용 등급이 아주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거나 집값 대비 대출금액이 높았던 비우량(subprime) 모기지 대출이 늘어났는데, 그동안 계속 상승해 왔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채무 불이행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다. ④이때 비우량 모기지의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이로부터 파생된 신종 유가증권들이 대형 투자은행 등 다양한 투자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유·유통되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⑤이들은 증권화로 인해 보다 안전해졌다는 과신 속에서 과도한 차입을 통해 투자를 크게 늘렸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기점으로 유가증권들의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연쇄 도산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다.

**①~③ #화제의 흐름 #재진술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미리 생각한 것처럼, 금융 위기 이후 '증권화'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모기지 대출기관들은 대출채권을 만기 때까지 보유해야 한다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증권화'시켜 버리면 되니까요. 따라서 대출채권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서 대출 기준을 완화했고, 신용 등급이 낮거나 집값 대비 대출금액이 높았던 '비우량 모기지 대출'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집값이 계속 올랐다면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여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채무 불이행 사태를 일으키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문제가 생기는 '사태'가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이어진 것이죠. (심지어 담보로 잡은 주택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 상태이기에, 당시에는 담보인 주택

을 회수해도 그 가치가 은행이 대출해 준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집주인도, 은행도 모두 큰 손해를 입게 된 것이죠.)

**④~⑤ #재진술 #화제의 흐름**

이러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비우량 모기지의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이로부터 파생된 신종 ‘유가증권’들이 다양한 투자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유·유통되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즉, 주택담보 대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유가증권’들이 너무나 많은 투자자들에게 퍼져 있게 된 것이 문제였던 것이예요.

이러한 투자자들은 ‘증권화’라는 혁신으로 인해 보다 안전해졌다는 과신 속에서 과도한 차입을 통해 투자를 크게 늘렸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유가증권’들의 가격까지 폭락함에 따라 이에 투자한 금융기관들의 연쇄 도산 사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진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이 지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아니라 ‘증권화의 영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화제의 흐름을 잡아야 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⑤이들은 증권화로 인해 보다 안전해졌다는 과신 속에서 과도한 차입을 통해 투자를 크게 늘렸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기점으로 유가증권들의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연쇄 도산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다.

‘증권화’라는 화제의 흐름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결국 ‘금융위기가 왜 일어났나’예요.

**3문단**

①이에 따라 증권화를 확대한 금융기관과 이를 허용한 감독당국에 비판이 집중되었다. ②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 위기의 원인이 증권화가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개입에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되었다. ③시장의 자기 조정 능력을 긍정하는 이 ‘정부 주범론’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 심화 문제를 포퓰리즘으로 해결하려던 것이 금융 위기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④이들에 따르면, 불평등 심화의 근본 원인은 기술 변화와 세계화이므로 그 해법 또한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확대 등의 정책에서 찾아야 했다. ⑤그럼에도 정치권은 저소득층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저소득층이 빚을 늘려 집을 보유할 수 있게 해주는 미분책을 펼쳤는데, 그로 인해 주택 가격 거품이 발생했고 마침내는 금융 위기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⑥이 문제와 관련해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거론된 것이 바로 **지역채투자법**이다.

**①~② #카테고리 나누기**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금융기관과 감독당국, 즉 ‘증권화’를 확대한 경제 관련자들에 비판이 집중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 위기의 원인을 ‘증권화’가 아닌 정부의 잘못된 개입, 즉 정치에서 찾기도 합니다. ‘경제’에서 ‘정치’로 카테고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지문은 단순히 ‘증권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금융 위기의 원인’을 두루두루 살피는 지문이었던 것입니다.

**③~⑥ #주장 제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이러한 입장은 시장의 자기 조정 능력을 긍정하는 ‘정부 주범론’이라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부릅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시장의 자기 조정 능력을 무시한 ‘정부’가 금융 위기의 ‘주범’이라는 ‘이론’을 의미하겠죠. 이 입장에서 정부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포퓰리즘으로 해결하려던 것이 금융 위기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들은 불평등 심화의 근본 원인을 기술 변화 및 세계화로 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이러한 변화에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교육 기회 확대 등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었는데, 정부가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게 주택담보 대출을 쉽게 받아 자산을 소유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이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이때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확대 등의 정책’이 ‘시장의 자기 조정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 주범론’은 시장의 자기 조정 능력을 긍정하는 입장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요. 즉, 어차피 시장은 자기 조정 능력이 있어서 저소득층에게 기술 및 세계화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 주면 알아서 잘 돌아갔을 것인데 정부가 나서서 일을 그르쳤다는 것이예요. 이렇게 개념의 정의와 재진술된 정보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납득하며 읽을 수 있어야 해요.

**⑥ #사례-원리 연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거론된 것은 ‘지역채투자법’이라고 합니다. ‘정부 주범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작동하겠죠? 뒤에서 그 정의를 체크하면서 ‘정부 주범론’의 정의와 대응시켜 확실하게 이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②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 위기의 원인이 증권화가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개입에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되었다.

카테고리가 나뉜다는 생각을 하면서, 단순한 ‘증권화’가 아닌 ‘금융 위기의 원인’으로 화제를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4문단**

①**지역채투자법**이란 저소득층의 금융 이용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은행들로 하여금 낙후 지역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②‘정부 주범론’은 이 법으로 인해 은행들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들에게까지 주택 자금 대출을 늘려야 했고, 이것이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③‘정부 주범론’은 여기에 더해 지역채투자법의 **추가적인 파급 효과**에도 주목한다. ④금융기관들은 지역채투자법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실사 관련 기강이 느슨해졌고** 지역채투자법과 무관한 대출에 대해서까지도 대출 기준을 전반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주택 가격 거품을 키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①~② #사례-원리 연결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지역채투자법’은 은행들로 하여금 낙후 지역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낙후된 ‘지역’에 ‘채투자’하라는 ‘법’이죠. 이는 은행들이 주로 낙후 지역에 살며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까지 주택 자금 대출을 늘리게 했고, 이것이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 ‘정부 주범론’의 주장이네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정부 주범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사례입니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 심화 문제’를 포

포퓰리즘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을 늘린 것이 금융 위기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정부 주범론'인데, '지역재투자법'의 정의는 이에 완벽하게 들어맞죠?

**③~④ #주장 제시 #재진술**

'정부 주범론'은 여기에서 '지역재투자법'의 추가적인 파급 효과에도 주목합니다. 금융기관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심사 관련 기강이 느슨해졌고, 결국 '지역재투자법'과 무관한 대출에 대해서까지도 대출 기준을 전반적으로 완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네요. 이러한 상황이 주택 가격 거품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정부 주범론'의 주장입니다.

지문이 전반적으로 '대출을 늘려서 가격 거품이 커졌고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이어졌다.'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금융&경제 안정' 관련 지문에서 제시된 내용과 매우 유사하니, 함께 학습해 봅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①지역재투자법이란 저소득층의 금융 이용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은행들로 하여금 낙후 지역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지역재투자법'이라는 정보 자체가 '정부 주범론'의 사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5문단**

①최근 미국에서는 '정부 주범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 주장이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②이 과정에서 '정부 주범론'을 반박하는 다양한 논거들이 '규제 실패론'의 이름으로 제시되었고, '정부 주범론'의 정치적 맥락도 새롭게 조명되었다. ③'규제 실패론'은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차입 및 증권화가 이들의 적극적인 로비에 따른 결과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흐름이 실물 경제의 안정적 성장도 저해했다고 주장한다. ④'규제 실패론'은 또한 지난 삼십 년 동안 소득 분배가 계속 불평등해지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소득을 얻게 된 부유층이 특히 금융에 대한 투자와 감세를 통해 부를 한층 키워 왔던 구조적 특징과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에도 주목한다. ⑤저소득층의 부채란 정치권의 온정주의가 아니라 부유층과 금융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늘어났던 것이라는 이 지적은 불평등의 심화와 금융 위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①~② #주장 제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카테고리 나누기**

최근 미국에서는 이렇게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부 주범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규제 실패론'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주범론'을 반박하는 다양한 논거들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규제'에 '실패'한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규제'가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해요.

나아가, '정부 주범론'의 정치적 맥락도 새롭게 조명되었다는 카테고리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정부 주범론'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포퓰리즘이라는 '정치적 맥락'을 통해 금융 위기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새롭게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조명되었다고 하니, 이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진 채로 읽어야겠네요.

**③ #주장 제시 #재진술**

'규제 실패론'은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차입 및 증권화가 이들의 적극적인 '로비'에 따른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즉, 정부가 '주범'이 되어 '지역재투자법'과 같은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그러한 법을 시행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대출을 많이 해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증권화'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큰 이득이겠죠?) 정치권에 로비하는 동안 실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했다는 것이 '규제 실패론'의 주장이네요. 금융기관의 로비로 인해 실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거품이 생길 정도로 급격하게 팽창했다는 것이죠.

**④~⑤ #주장 제시 #재진술**

'규제 실패론'은 또한 소득 불평등 과정에서 보다 많은 소득을 얻게 된 부유층이 금융에 대한 투자와 감세를 통해 부를 한층 키워 왔던 구조적 특징 및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에도 주목합니다. 저소득층의 부채가 늘어난 것은 정치권의 온정주의가 아니라, 즉 저소득층의 자산을 늘려주기 위한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정책이 아니라 부유층과 금융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네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이나 그 자산에 대한 대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권 입장에서는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까지 끌어 들여 자산 가격 상승을 도모했고,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이 주장의 요지네요. 이는 결국 불평등의 심화가 금융 위기로까지 이어졌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나아가 이것이 바로 '정치적 맥락의 새로운 조명'에 해당하겠죠?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 문제가 아니라, 부유층 및 금융권이 로비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운 것이 문제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앞의 내용과 엮어서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②이 과정에서 '정부 주범론'을 반박하는 다양한 논거들이 '규제 실패론'의 이름으로 제시되었고, '정부 주범론'의 정치적 맥락도 새롭게 조명되었다.

단순히 '규제 실패론'이라는 개념이 제시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에서 넘어, '정치적 맥락'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형성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미시적인 정보들을 놓치면서 선지 판단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1. 밑줄에 나타난 입장에 대해 관한 진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① ‘정부 주범론’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경제 주체들의 판단을 오도했다고 본다.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정부 주범론’은 저소득층의 주택 보유 확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결과, 저소득층 및 금융기관과 같은 경제 주체들의 판단을 오도했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채를 지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를 느슨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말이죠. ‘정부 주범론’의 주장 그 자체를 읊어주는 선지네요.

- ② ‘정부 주범론’은 정치권이 지역채투자법으로 저소득층의 표를 얻으려 했다고 본다.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 문장, 4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포퓰리즘!
해설	‘정부 주범론’은 정치권이 ‘지역채투자법’과 같은 법으로 포퓰리즘적 정책을 펼친 것이 금융 위기의 핵심 원인이라고 봅니다. ‘포퓰리즘’이 무엇인지만 알고 있으면, ‘정부 주범론’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저소득층의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 ③ ‘규제 실패론’은 금융과 정치권의 유착 관계를 비판한다.

명시적 근거	5문단 2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게 새로운 정치적 맥락이었지.
해설	‘규제 실패론’에서는 금융기관의 정치권에 대한 적극적인 로비의 결과 무분별한 차입 및 ‘증권화’로 이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금융과 정치권의 유착 관계를 비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새로운 정치적 맥락’이라는 카테고리를 통해 확실하게 인식했던 내용입니다.

- ④ ‘규제 실패론’은 가계 부채 증가가 고소득층의 투자 기회 확대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명시적 근거	5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게 규제 실패론의 핵심이지.
해설	‘규제 실패론’은 저소득층의 가계 부채 증가가 부유층의 이익 극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봅니다. 이는 고소득층이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해 투자 기회를 확대한 것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규제 실패론’의 주장 그 자체이니 가법게 지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⑤ ‘정부 주범론’과 ‘규제 실패론’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 문장, 5문단 4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규제 실패론은 소득 불평등을 이용하려고 했다고 보는 거지.
해설	‘정부 주범론’은 정부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채투자법’과 같은 정책을 펼친 결과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를 ‘미봉책’이라고 표현했으니 정부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규제 실패론’은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부유층 및 금융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부채를 늘렸고, 이것이 금융 위기로 이어졌다고 봐요. 즉, ‘규제 실패론’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고 보는 입장인 것이죠. ‘정부 주범론’ 부분은 애매하더라도, ‘규제 실패론’ 부분에서 확실하게 틀렸으니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 ‘증권화’와 관련한 다음의 추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① 증권화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엔 연계된 증권의 투자자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일부 투자자에 한정되었을 것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광범위하게 보유·유통되었다며.
해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연계된 ‘유가증권’이 다양한 투자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유·유통되었다는 것이 ‘증권화’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증권화’로 인해 관련 투자가 안전해졌다고 과신한 결과였어요. ‘증권화’가 금융 위기에 영향을 끼친 양상이라는 핵심 정보에 대한 내용이기에, 보자마자 답으로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 ② 증권화는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을 낮추어 주는 혁신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체 금융권의 위험을 높였을 것이다.

명시적 근거	1문단 5번 문장, 2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금융 위기 이전, ‘증권화’는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을 여러 투자자에게 나누어 경제 전체의 리스크를 줄이는 혁신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러한 ‘증권화’를 믿고 차입과 대출을 늘린 금융기관의 행태가 전체 금융권의 위험을 높여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이 지문의 초반부 내용입니다.

③ 모기지 채권의 증권화는 보다 많은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 되도록 함으로써 주택 가격의 거품을 키웠을 것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2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증권화의 악영향 그 자체네.
해설	모기지 채권의 '증권화'가 가능해지자, 대출채권을 만기 때까지 보유하지 않아도 된 모기지 대출기관 들은 대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것이 주택 가격의 거품을 키워 금융 위기의 시초가 되었다는 것이 지문의 내용이네요.

④ 부동산 시장과 유동화 증권의 현금화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적 전망으로 인해 증권화가 확대되었을 것이다.

명시적 근거	1문단 3번~5번 문장, 2문단 4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낙관적으로 보고 증권화를 막 진행했지.
해설	투자자들은 모기지 대출기관으로부터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기꺼이 전가받았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계속해서 집값이 오를 것이니,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낮다고 본 것이네요.  또한 모기지 대출기관은 여러 투자자들에게 '유동화 증권'을 매각했습니다. 이는 그 증권에 투자한 사람들이 '유동화 증권'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낙관적 전망이 '증권화'를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⑤ 증권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융 위기를 발생시켰던 대출기준 완화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시적 근거	3문단 2번~3번 문장, 5문단 3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대출기준 완화의 원인? 포퓰리즘일 수도 있고, 로비일 수도 있지. 이걸 규명해야 증권화에 대한 규제 강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다.
해설	꽤 어려운 선지입니다. 먼저 선지에서 묻는 것부터 천천히 따져봅시다. 핵심은 '증권화에 대한 규제 강화 여부'입니다. 이 지문에 제시된 입장들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정부 주범론'에서는 '증권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입니다. '증권화'를 통해 시장이 알아서 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펼쳐서 일을 그르쳤다고 볼 것이니까요. 한편 '규제 실패론'에서는 '증권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겠네요. 이들은 부유층 및 금융권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나친 '증권화'를 사용했고, 이것이 결국 금융 위기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니까요.

명시적 근거	이때 선지에서 묻는 것은 '대출기준 완화의 원인'입니다. '정부 주범론'에서는 이를 정부의 포퓰리즘으로, '규제 실패론'에서는 부유층 및 금융권의 로비로 보고 있죠? 이 중 무엇이 진짜 원인인지를 규명해야 '증권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선지에서 묻는 것을 바탕으로, 지문에서 읽은 내용들을 연결하여 차분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3.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 '정부 주범론'을 반박하는 다양한 논거들
--------------------------

- 일종의 비판 문제입니다. '정부 주범론'의 주장을 공격하는 입장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① 지역채투자법에는 저소득층에 대해 다른 계층보다 집값 대비 대출 한도를 더 높게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있다.

명시적 근거	4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정부 주범론의 입장 그 자체인데?
해설	'정부 주범론'에서는 '지역채투자법'과 같은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이 빚을 돌려 집을 보유할 수 있게 해주는 미봉책을 펼친 것이 금융 위기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지역채투자법'에 저소득층에 대해 집값 대비 대출 한도를 더 높게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정부 주범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비판을 해야 하는데 옹호하고 있으니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②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연체율은 지역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일반 대출의 연체율보다 높았다.

명시적 근거	4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면 지역채투자법은 상관이 없는 거네.
해설	'정부 주범론'은 '지역채투자법'과 같은 정책에 적용되는 낙후 지역에 살던 저소득층에까지 주택 자금 대출을 늘렸던 것이 금융 위기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연체율은 지역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일반 대출의 연체율보다 높았다는 것은, '지역채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 등의 변수는 금융 위기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논거가 될 수 있어요. 지역이나 정부 정책 등과는 상관없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는 '정부 주범론'을 반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③ 부동산 가격 거품을 가져온 주된 요인은 주택 가격의 상승보다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었다.

명시적 근거	4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정부 주범론에서는 주택에 집중했는지.
해설	'정부 주범론'은 정부의 정책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택 자금 대출 증가가 불러 온 부동산 가격 거품이 금융 위기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 상승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부동산 가격 거품을 가져왔다는 것을 입증하면, '정부 주범론'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들이 상업용 부동산을 사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니까요.

④ 지역재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대출들 중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비중은 낮았다.

명시적 근거	4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럼 지역재투자법이 문제가 아니네.
해설	'지역재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대출들 중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비중이 낮았다는 것은, '지역재투자법'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 주범론'을 반박하는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⑤ 지역재투자법과 유사한 규제가 없는 나라에서도 금융 위기가 발생하였다.

명시적 근거	4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럼 지역재투자법이 문제가 아니네.
해설	'지역재투자법'과 유사한 규제가 없는 나라에서도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은 '지역재투자법'을 금융 위기의 원인으로 지정한 '정부 주범론'을 반박하는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④ 카테고리 나누기 : 정보들의 범주가 나뉠 때, 그들이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카테고리에 맞춰 정보를 정리하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문 내용 총정리\***

경제 지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함께, '결국, 다 같은 말이다.'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최대한 납득하며 읽는 태도가 갖춰져 있었다면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나아가 늘 강조하는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여러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지문이기도 했죠? 수능에도 언제든 다시 출제될 수 있는 소재이니,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합시다.

**4주차 <인문 제재의 지문 읽기>**

2026LEET [1~3] 인문 '지구법학' ☆☆

**1문단**

①법학 전통에서 대체로 자연은 인간에게 유용한 것들의 총체이자 집단 혹은 개인의 자산으로 간주된다. ②소유 대상으로서의 자연은 그것을 둘러싼 인간 상호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위해 존재한다. ③생태사상가 베리는 인간이 세계 전체 혹은 타자와 맺는 관계 양식이 인간중심의 법규범에 반영되어온 동시에 그러한 법규범에 의해 강화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④법적 인격만을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보고 인격 아닌 모든 존재자는 행위의 객체인 물건으로 보는 법은 자연의 가치를 인간의 손익과 관련지어 평가할 뿐 존중하진 않았다. ⑤최장 시간에 걸쳐 최대 다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방식으로 자연자원을 향유하기 위해 보호해야 한다는 보전주의적 관점 역시 근본적으로 인간을 중심에 둔다. ⑥베리가 주장한 지구법학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의 권리를 지구권으로 정립하려 한 급진적인 법사상이다.

**①~② #정의 제시 #재진술**

법학 전통에서 바라는 '자연'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법학 전통에서 '자연'은 인간에게 유용한 것들의 총체, 집단 혹은 개인의 자산으로 간주된다고 해요. 즉,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받지는 못하고 인간의 부속품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2번 문장의 내용은 이를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그저 '소유 대상'이고, 그것을 둘러싼 인간 상호 간의 권리의무관계(소유권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를 위해 존재할 뿐이에요.

**③~④ #주장 제시 #재진술**

이에 대해, 생태사상가 '베리'는 인간이 세계 전체 혹은 타자, 즉 '자연'과 맺는 관계 양식에 대해 지적합니다. 지나치게 인간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이 관계 양식이 '인간중심의 법규범'에 반영되어왔고, 이에 의해 강화되었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을 부속품으로 보는 입장이 법규범에 반영되었고, 이에 다시 그 입장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인간중심'의 사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가치는 그저 인간의 손익과 관련지어 평가될 뿐, 권리와 의무는 인간이라는 '법적 인격'만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는 게 '베리'의 주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리'의 주장이 곧 '자연의 권리 인정'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법규범을 비판한다는 것은, 인간이 부속품으로 여겼던 자연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니까요.

**⑤~⑥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주장 제시 #재진술**

결론은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보전주의적 관점' 역시 근본적으로 인간을 중심에 둔다는 것이 '베리'의 생각입니다. 이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자연의 '보전'에 관심을 두기는 하지만, 그 목적이 최장 시간에 걸쳐 최대 다수, 즉 인간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이는 '베리'가 주장한 '지구법학'으로 이어집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지구권'이라는 권리를 정립하며 이를 법학의 영역으로 끌어드리려는 급진적인 법사상이에요. 주장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으니 확실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③생태사상가 베리는 인간이 세계 전체 혹은 타자와 맺는 관계 양식이 인간중심의 법규범에 반영되어온 동시에 그러한 법규범에 의해 강화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어떠한 주장을 지적한다는 것은, 그 반대 주장이 자신의 의견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통해, '베리'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 미리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2문단 (1)**

①비인간 존재자에게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그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②가령 레건은 살아있음을 넘어 스스로가 삶의 주체임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는 상대적으로 더 월등한 존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거로써 동물의 권리를 옹호한다. ③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선을 가지며 그 고유한 가치의 잠재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 테일러는 식물을 포함한 생명체까지를 권리의 주체로 이해한다.

**①~③ #카테고리 나누기 #주장 제시 #비교/대조**

자연과 같은 '비인간 존재자'에게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주장이 나올 것임을 생각하며 카테고리 나누고, 어떤 주장들이 있는지 알아보려 갑시다.

먼저 '레건'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삶의 주체임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는 더 월등한 존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거를 펼칩니다. 이때 스스로가 삶의 주체임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는 '동물'을 말하는 것이었네요. 한편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의 잠재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식물'을 포함한 생명체까지도 권리의 주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식물 역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의 잠재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서 '레건'과 '테일러'의 주장이 '권리의 주체'를 어디까지로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나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되는 두 대상이 나오면 그들이 정확히 어떤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는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2문단 (2)**

④더 나아가 지구법학은 우주의 질서 안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그것이 권리를 가진다는 규범적 결론을 끌어낸다. ⑤이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지속되는 실체를 갖거나 일정한 지리적 영역을 점하는 존재자인 무생물의 권리도 인정된다. ⑥지구법학의 지향을 '야생의 법'이라 표현한 콜리넨은 다양한 창조물들의 생존과 안녕은 인간이 아니라 지구 행성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며 권리의 주체에 대한 과감한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⑦인류는 그간 법에서 억눌려 왔던 감성과 감각을 되살려 지구공동체의 춤에 참여하고, 그 박자에 스스로 몸짓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⑧지구권은 존재할 권리, 서식지에 관한 권리, 지구공동체가 부단히 새로워지는 과정에서 자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권리 등으로 구체화된다. ⑨강은 강의 권리를, 새는 새의 권리를, 인간은 인간의 권리를 가지며, 각 권리의 존재

양태는 저마다 다르다.

**④~⑤ #주장 제시 #재진술**

중요한 것은 '지구법학'이라는 화제일 것입니다. '지구법학'은 한 술 더 떠서, 우주의 질서 안에 무언가가 존재하지만 해도 권리의 주체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즉, '무생물' 역시 권리의 주체라는 것이죠. '무생물'도 물리적으로 지속되는 실체를 갖거나 지리적 영역을 점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권리의 주체'를 어디까지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⑥~⑦ #주장 제시 #재진술**

'베리'처럼 '지구법학'을 주장한 사람으로는 '컬리넨'도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아닌 지구를 중심에 놓고 권리 주체에 대한 과감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상 '베리'와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지구법학'이라는 하나의 개념에 대한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이니, 결국 다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입니다. 그간 인간중심의 법규범에 의해 인간의 감성과 감각은 억눌려 있었다고 해요. 법규범 자체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동물과 식물, 나아가 무생물에게 감성과 감각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를 되살려 지구공동체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지구법학'의 정신입니다.

**⑧~⑨ #정의 제시 #재진술**

'지구권'은 여러 가지 권리로 구체화됩니다. 강·새·인간과 같은 지구의 존재들은 서로 다른 양태로 나타나는 각자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에요. 각 존재마다 역할과 기능이 다르니, 권리의 양태도 서로 다르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최대한 납득하면서 '지구법학'의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⑤이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지속되는 실체를 갖거나 일정한 지리적 영역을 점하는 존재자인 무생물의 권리도 인정된다.

'무생물'의 권리 또한 인정된다는 결론, 그리고 그 결론이 나오게 된 맥락을 모두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다 같은 말'이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읽으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3문단**

①이러한 권리 개념을 수용하여 구체적인 법의 근거로 채택한 사례도 없진 않다. ②전문에서부터 '우리가 그 일부이자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어머니 지구'와의 조화를 언급한 에콰도르 헌법이 그 예이다. ③헌법에 환경권을 명시한 국가들 대부분이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인류의 지속가능성만 환경을 보전·관리할 목적이라 본 데 반해, 에콰도르는 '생명의 순환과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받을 권리'와 '자연이 스스로를 원상회복할 권리'를 헌법에 규정한다. ④또한, 누구든 청원권을 행사하여 자연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⑤**볼리비아**는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법>에서 자연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고 생태계가 본성 그대로 유지·회복하는 과정을 도울 국민의 의무를 규정한다. ⑥한편 **뉴질랜드**는 전제로서의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 대신 특정 생태계나 종의 권리를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을 택한다. ⑦'내가 강이고 강이 나다.'라는 마오리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족의 믿음을 존중하여 황거누이강을 법적 인격체로 규정하고, 그 권리는 법이 정한 후견인이 강의 이름으로 강을 대리하여 집행할 것을 명시한 <테 아와 투푸아법>이 그 예이다. ⑧호르던 물길에 가로막힌 강이나 서식지를 침범당한 새의 권리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려는 환경운동의 기획을 넘어 구체적인 법리 구성 단계에서도 다루어지게 되었다.

**① #카테고리 나누기**

이제부터는 이러한 '지구법학'의 정신이 구체적인 법의 근거로 채택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나눠놓고, 이 사례들을 통해 '지구권'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②~⑤ #사례-원리 연결 #정의 제시 #재진술**

먼저 '에콰도르 헌법'입니다. 이는 전문에서부터 지구와 조화를 언급하면서, 자연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 자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요. 나아가 누구든 청원권을 행사하여 자연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누가 되었던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볼리비아' 역시 자연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고 생태계가 본성 그대로 유지·회복하는 과정을 도울 국민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들은 '지구법학'에서 말하는 '권리 주체에 대한 과감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외의 '무생물'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⑥~⑦ #정의 제시 #재진술 #비교/대조**

이번엔 '뉴질랜드'입니다. 여기서는 '에콰도르', '볼리비아'처럼 전제로서의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신 특정 생태계나 종의 권리를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을 택한다고 해요. '황거누이강'이라는 특정 생태계를 법적 인격체로 규정하고, 그 권리는 법이 정한 후견인이 강의 이름으로 강을 대리하여 집행할 것을 규정한 것이 그 사례네요. 이때 '후견인'은 아마 마오리 족 사람이겠죠? 이 법 자체가 마오리 족의 믿음을 존중하여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청원권을 행사하여 자연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에콰도르 헌법'과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차이점을 체크하는 것을 넘어, 자연 전체에 대한 권리 보호를 주창한 '에콰도르 헌법'과 달리 '뉴질랜드'의 '테 아와 투푸아법'은 특정한 이들의 믿음을 존중하는 목적으로 만든 법이기에 특정한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납득하는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선지 판단이 빨라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⑧ #재진술 #화제의 흐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강이나 새의 권리, 즉 '무생물'의 권리가 단순한 환경운동의 기획을 넘어 구체적인 법리 구성 단계에서도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지문의 화제는 '지구법학', 즉 법학과 관련된 것임을 잊으면 안 돼요.

**\*하이라이트 문장\***

⑧호르던 물길에 가로막힌 강이나 서식지를 침범당한 새의 권리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려는 환경운동의 기획을 넘어 구체적인 법리 구성 단계에서도 다루어지게 되었다.

단순한 의의 제시 문장이기보다, 이 지문의 화제가 '법학'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답의 근거가 갈리는 경우도 많으니깐요.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④

① 인간중심적 법규범은 자연의 권리 근거를 '존재함' 자체에서 구한다.

명시적 근거	1문단 3번~4번 문장, 2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건 지구법학이지.
해설	'인간중심적 법규범'은 인간의 권리만을 인정합니다. 애초에 자연의 권리 근거를 '존재함' 자체에서 구하는 건 '지구법학'이었죠?

② 지구법학은 모든 개체의 권리가 동일한 존재 양태를 가진다고 이해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9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서로 다르지.
해설	모든 개체는 서로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존재 양태도 서로 다르다는 것. 확실하게 납득했던 내용이지? 이 부분을 납득하지 못했다면 기억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결국 지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낭비했을 거예요.

③ 보전주의적 관점에는 법적 권리 주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 있다.

명시적 근거	1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보전주의적 관점도 인간 중심적이지.
해설	'보전주의적 관점'은 자연 보호를 강조하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법적 권리 주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보전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이었죠? 이 역시 확실하게 납득했던 내용입니다.

④ 지구권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지리적 영역을 접한다는 사실에서 권리 주체성을 도출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래서 무생물의 권리도 인정한 거지.
해설	'지구권'을 인정하는 입장, 즉 '지구법학'에서는 그저 일정한 지리적 영역을 점하고 있는 무생물 역시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이니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해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⑤ 켈리넨은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감응 능력을 증시하는 기존 법학을 지구법학과 조율하려고 했다.

명시적 근거	2문단 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존 법학이 잘못됐다고 했지, 조율은 무슨.
해설	'켈리넨'은 기존 법학이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감응 능력, 즉 인간의 감성과 감각을 억눌러 왔다고 봅니다. 이에 이를 되살려 '지구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구법학'을 주장한 것이죠? 기존 법학과 지구법학을 조율하려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틀린 선지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이러한 권리 개념을 수용하여 구체적인 법의 근거로 채택한 ㉠ 사례

- 에콰도르, 볼리비아, 뉴질랜드의 이야기가 문제화되었습니다. 이들의 특징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니, 가볍게 문제를 해결해보도록 해요.

① 에콰도르는 자연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데 비해 뉴질랜드는 사안별로 규정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 문장, 3문단 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둘 사이의 큰 차이점이었죠? 지문을 읽으면서 미리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②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법>과 달리, <테 아와 투푸아법>은 자연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5번~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연의 권리 주체성은 둘 다 인정하지.
해설	㉠에 해당하는 세 사례 모두 '자연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는 '지구법학'의 정신이 법에 채택된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인식했다면 보자마자 답으로 고를 수 있겠죠?

③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모두 지구공동체의 유지 및 재생을 도출 인간의 역할에 관해 법에 명시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2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의 법은 사실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둘 모두 지구권을 위한 인간의 역할을 법에 명시하고 있었죠.

④ 에콰도르 헌법에서는 누구나 자연을 법적으로 대변할 수 있지만, <테 아와 투푸아법>에서는 특정인만이 특정 생태계를 법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3문단 4번 문장, 3문단 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네.
해설	이 역시 미리 생각한 차이점이었습니다. '뉴질랜드'는 특정인들의 생각을 존중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 것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납득했던 내용이지요? 이렇게 미리 납득한 내용이 많을수록 당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선지가 많아집니다.

⑤ 에콰도르 헌법과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법>은 모두 침해된 자연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권리와 별도로 자연도 회복할 권리를 갖는다고 본다.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이 역시 당연하게 맞는 선지로 처리할 수 있겠죠? '에콰도르' 헌법과 '볼리비아'의 법은 모두 자연의 회복할 권리를 명시한 법입니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판결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 선지를 살짝 보니, '베리', '레건', '테일러', '컬리넨'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리'와 '컬리넨'은 모두 '무생물'의 권리까지 인정하고자 한 '지구법학'자들이고, '레건'은 '동물'의 권리까지, '테일러'는 '식물'의 권리까지 인정하고 한 이들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정확하게 체크해놓고, [A]~[C]에 대해 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정리하면 가볍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A] 도로 확장공사 중 다량의 흙과 돌이 강에 매립되어 강폭이 좁아지고 강물이 범람하자, 마을 주민은 훼손된 강을 대리하여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강의 권리주체성을 부정하여 청구를 각하했다.

- 마을 주민들이 '강'이라는 무생물을 대리하여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청구를 각하했어요. 참고로 '청구를 각하하다'는 것은 '청구 요건에 맞지 않아 심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인 어휘로 알아두도록 해요.

어쨌든, 이에 대해서는 '베리', '컬리넨' 같은 지구법학자들이 반발하겠네요. 다만 '레건'과 '테일러'는 이러한 법원의 입장에 동의할 것입니다. 강은 '동물' 혹은 '식물'이 아니니까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B] 수로 공사 중 지역 원주민들에게 문화적으로 특별한 상징성을 지닌 야생 버 서식지가 수몰되자, 원주민 대표는 버를 대리하여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공사의 중단을 명령했다.

- 이번엔 '야생 버'라는 '식물'을 대리한 소를 법원이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이는 '동물'의 권리까지 인정하는 '레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죠?

[C] 동물권리보호협회는 동물원 실태 조사 후, 오랑우탄이 자기 본성에 맞는 장소에서 살 권리를 가짐을 주장하며 간힌 오랑우탄을 대리하여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적절한 거주 조건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 이번엔 '동물'인 '오랑우탄'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네요. 이는 '레건'을 비롯한 모두가 동의한다고 봐야겠죠?

- ① [A]에 대해 레건은 동의하고 컬리넨은 동의하지 않겠군.
- ② [B]에 대해 베리는 동의하고 레건은 동의하지 않겠군.
- ③ [C]에 대해 베리는 동의하고 테일러는 동의하지 않겠군.
- ④ [A]와 [B] 모두에 대해 테일러는 동의하겠군.
- ⑤ [B]와 [C] 모두에 대해 컬리넨은 동의하겠군.

- 이렇게 <보기>를 정리하면 가볍게 답을 3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④ 카테고리 나누기 : 정보들의 범주가 나뉠 때, 그들이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카테고리에 맞춰 정보를 정리하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⑤ 비교/대조 : 비교되는 대상이 나오면, '공통점'과 '차이점' 중 심으로 읽어나가면 됩니다.

⑥ 사례-원리 연결 : 모든 사례는 어떠한 추상적인 원리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을 연결지며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결국, 다 같은 말'이라는 인문 지문의 대원칙을 살리며 주장을 납득하고, 사례가 제시되었을 때 어떤 원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지 생각하는 태도가 갖춰져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답을 다 맞혔느냐보다도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답을 골라냈는지에 초점을 두고 복습해보도록 합시다.

**4주차 <과학·기술 제재의 지문 읽기>**

2020LEET [7~9] 과학+기술 '단백질체학의 응용' ☆☆☆

**1문단**

①현대 생명과학의 핵심적인 키워드들 중 하나는 오믹스(omics)이다. ②단일 유전자, 단일 단백질의 기능과 구조 분석에 집중하였던 과거의 생명과학과 달리, 오믹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 개체, 혹은 하나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전체의 집합인 '유전체'를 연구하는 유전체학, RNA 전체 즉 '전사체'에 대한 연구인 전사체학, 단백질 전체의 집합인 '단백질체'를 연구하는 단백질체학 등의 연구를 통칭한다.

**①~② #화제 제시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현대 생명과학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오믹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일 유전자 및 단백질의 기능·구조 분석에 집중하였던 '과거의 생명과학'과 달리, '거시적인 관점'으로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것을 통칭한다고 해요. '유전체학', '전사체학', '단백질체학'이라는 개념의 경의를 보면, 모두 '전체'(=거시적인 관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각 개념의 정의부터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유전체학'은 '유전자 전체의 집합인 '유전체'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나아가 '전사체학'은 RNA 전체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해요. 자연스럽게 'RNA 전체=전사체'라는 정의도 생겨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단백질 전체'의 집합인 '단백질체'를 연구하는 학문은 '단백질체학'입니다. 모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과학·기술 지문의 경우 초반부에 제시되는 정보를 확실하게 견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시간을 써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문단**

①분자생물학 이론에 따르면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정보의 일부만이 전사 과정을 통해 RNA로 옮겨진다. ②그리고 RNA 중의 일부만이 번역 과정을 통해 단백질로 만들어진다. ③어떠한 생물 개체나 어떠한 세포와 같은 특정 생명 시스템의 유전체는 그 시스템이 수행 가능한 모든 기능에 대한 유전 정보를 총괄하여 가지고 있다. ④한 인간이라는 시스템과 그 인간의 간(肝)세포라는 또 다른 시스템의 유전체는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간세포와 생쥐의 간세포의 유전체는 각각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 ⑤한편 전사체는 유전체 정보의 일부만 즉 유전체 정보들 중 현재 수행 중일 가능성이 큰 기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단백질체는 전사체의 일부만 즉 실제로 수행 중인 기능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⑥생명체에서 생화학 반응의 촉매 작용과 같은 필수적인 '일'을 직접 수행하는 물질은 단백질을 이루는 단백질들이다.

**①~② #정의 제시 #재진술**

계속해서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사 과정'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는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정보의 일부가 RNA로 옮겨지는 과정이라고 해요. '유전체'의 일부가 '전사체'의 일부가 되는 것이니 '전사'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이겠죠? 나아가 이러한 RNA 중 일부만이 '번역 과정'을 통해 '단백질'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분자생물학 내에는 '유전체→전사체→단백질체'라는 위계가 존재하는 것

이네요. 이러한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한 채로 뒤에 나오는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④ #정의 제시 #재진술 #사례-원리 연결**

어떠한 생물 개체 혹은 세포처럼 특정 생명 시스템의 '유전체'는 그 시스템이 수행 가능한 모든 기능에 대한 유전 정보를 총괄하여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유전체'를 다시금 정의하고 있어요. 이는 1문단에서 말한 것처럼 '유전자 전체의 집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스템이 수행 가능한 모든 기능에 대한 유전 정보를 총괄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나아가, 4번 문장의 내용 역시 일종의 사례로 생각하며 당연히 납득해야 합니다. 한 인간이라는 시스템의 '유전체'는 자신이 수행 가능한 모든 기능에 대한 유전 정보를 총괄할 것이고, 이에 당연히 간세포의 기능에 대한 유전 정보도 총괄할 것입니다. 즉, 간세포의 '유전체'는 인간이라는 시스템 전체의 '유전체'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간세포의 유전체와 인간 시스템 전체의 유전체는 아예 동일합니다. 납득하는 과정 자체에 주목하면서 이해해주세요.)

반대로, 인간의 간세포와 생쥐의 간세포의 '유전체'는 각각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애초에 서로 다른 생명 시스템이니, 이를 총괄하는 '유전체'의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죠?

**⑤~⑥ #정의 제시 #재진술**

이번엔 '전사체'를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전체' 정보의 일부 중 '현재 수행 중일 가능성이 큰 기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사체'는 'RNA 전체'를 의미하는데, 이로부터 'RNA=현재 수행 중일 가능성이 큰 기능을 관장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한편 '단백질체는 '전사체'의 일부만, 즉 RNA의 일부만 중에서 '실제로 수행 중인 기능'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RNA는 '수행 중일 가능성이 큰 기능'에 대한 것인데, 이 중에서 '실제로 수행 중인 것'이 바로 '단백질'이라는 것이죠. 이로부터 생명체에서 필수적인 '일'을 직접 수행하는 물질은 '단백질'이라는 6번 문장의 내용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정리하는 '초반부 정보'들이 뒤에서 활용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들여야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⑤한편 전사체는 유전체 정보의 일부만 즉 유전체 정보들 중 현재 수행 중일 가능성이 큰 기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단백질체는 전사체의 일부만 즉 실제로 수행 중인 기능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앞에서 체크한 '유전체'의 정의를 끌고 오며, '전사체'와 '단백질체'의 새로운 정의를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되어야 다음 문단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3문단**

①인간에게는 2만 중 이상의 단백질이 있고, 인체의 세포들은 종류에 따라 전체 단백질 중 일부를 서로 다른 조합으로 가지고

있다. ②즉 피부 세포, 신경 세포, 근육 세포 등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단백질도 있고, 한 종류의 세포에서만 발견되는 단백질도 있다. ③세포는 외부의 자극이나 내재된 프로그램에 의해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의 세포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는데, 이러한 현상을 ‘분화’라고 한다. ④분화를 통해 다른 세포로 변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의 조합도 달라진다. ⑤세포의 분화는 개체 발생 과정에서 주로 관찰되지만,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과정도 분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①~② #정의 제시 #재진술**

계속해서 ‘단백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 많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인체의 세포들은 종류에 따라 전체 단백질 중 일부를 서로 다른 조합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지? ‘단백질’은 곧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물질인데, 각 세포마다 하는 ‘일’이 다를 테니 가지고 있는 단백질의 조합도 다를 것입니다. 2번 문장 역시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겠지요. 결국 세포마다 단백질의 조합이 다르다는 내용의 재진술이니깐요. 이렇게 앞에서 이해한 내용을 끌고 와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춰야 해요.

**③~④ #수식된 정의 제시 #재진술**

이러한 세포는 외부 자극 및 내재된 프로그램에 의해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의 세포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포가 변화하는 현상을 ‘분화’라고 정의하네요. ‘분화’를 겪으면 다른 세포가 되고, 당연하게도 단백질의 조합 역시 달라질 것입니다. 세포마다 단백질의 조합이 다르니까요.

**⑤ #화제의 흐름**

이와 같은 세포의 ‘분화’는 개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주로 관찰된다고 합니다. 수정란이 ‘분화’되며 인간이라는 개체가 발생하듯이 말이지요. 그런데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과정도 ‘분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개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세포의 ‘변화’가 있는 경우도 당연히 ‘분화 과정’이겠지요.

이를 납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암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눈치를 채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정보들을 모아서 ‘암세포’와 관련된 진짜 화제를 이야기할 것 같다는 느낌 말이지요. 이 예상이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화제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태도가 중요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⑤세포의 분화는 개체 발생 과정에서 주로 관찰되지만,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과정도 분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정보들을 통해 납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화제의 흐름까지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독립적인 정보들의 처리’가 아닌 ‘정보들의 집합체인 화제의 이해’임을 잊지 마세요.

**4문단**

①어떤 환자의 암세포와 정상 세포를 대상으로 단백질체학 응용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②암세포의 단백질체와 정상 세포의 단백질체를 서로 비교해 보면, 정상 세포에 비하여 암세포에서 양이 변화되어 있는 단백질을 발견할 수 있다. ③과학자들은 이러한 단백질을 새로운 암 치료 표적 단백질 후보로 찾아내어 연구를 진행한다. ④암세포에서 정상 세포보다 양이 늘어나 있는 단백질은 발암 단백질의 후보가 될 수 있고, 암세포에서 정상 세포보다 양이 줄어든 단백질은 암 억제 단백질의 후보가 될 수 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보로 찾아내어 연구를 진행한다. ④암세포에서 정상 세포보다 양이 늘어나 있는 단백질은 발암 단백질의 후보가 될 수 있고, 암세포에서 정상 세포보다 양이 줄어든 단백질은 암 억제 단백질의 후보가 될 수 있다.

**① #화제의 흐름**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단백질체학’을 통해 ‘암세포’와 정상 세포 대상 응용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껏 정리하고 납득한 내용을 모두 이용할 준비를 하면서 읽어봅시다.

**②~④ #정의 제시 #재진술**

원리는 간단합니다. ‘암세포’의 단백질체와 정상 세포와 단백질체를 비교해 보면, 정상 세포에 비하여 ‘암세포’에서 양이 변화되어 있는 단백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포마다 단백질의 조합이 다르니, ‘분화’의 결과로 단백질의 양도 달라졌을 테니까요. 이러한 단백질이 바로 ‘암 치료 표적 단백질’의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양이 늘어나 있다면 ‘발암 단백질’의 후보, 줄어들었다면 ‘암 억제 단백질’의 후보가 되는 것이죠. ‘암세포’가 되면서 양이 늘었다면 당연히 그 단백질이 암을 일으킨다고 의심할 만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나아가, ‘단백질’은 곧 실질적인 ‘일’을 하는 곳이기엔 ‘유전체’나 ‘전사체’가 아닌 ‘단백질체’를 통해 ‘암 치료 연구’를 한다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요? 최대한 앞 문단의 내용들을 끌고 오며 이해하려고 해야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②암세포의 단백질체와 정상 세포의 단백질체를 서로 비교해 보면, 정상 세포에 비하여 암세포에서 양이 변화되어 있는 단백질을 발견할 수 있다.

앞 문단에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앞 문단의 내용이 연결된다는 느낌이 들어야 제대로 독해하고 있는 거예요.

**5문단**

①그렇다면 이렇게 찾아낸 단백질이 2만 중 이상의 단백질 중 어느 것인지 알아내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②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일렬로 연결된 형태를 가지며, 단백질 하나의 아미노산 개수는 평균 500개 정도이다. ③서로 다른 단백질은 서로 다른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기 때문에 특정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알면 그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인지 알아낼 수 있다.

**①~③ #화제의 흐름 #정의 제시 #재진술 #화제의 흐름**

일단 어떠한 단백질의 양이 늘거나 줄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 다음은 그 단백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암 치료 연구에 해당 단백질을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일렬로 연결된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단백질은 서로 다른 ‘아미노산’ 서열을 가진다고 해요. 마치 세포마다 단백질의 조합이 다르듯이, 단백질마다 ‘아미노산’의 서열도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미리 알고 있다면, 양이 변한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하여 어떤 단백질이 역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을 알아내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이 방법에 대해 다음 문단에서 소개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화제의 흐름을 장악한 상태로 글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해요1

**\*하이라이트 문장\***

③서로 다른 단백질은 서로 다른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기 때문에 특정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알면 그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인지 알아낼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장의 내용을 납득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연스럽게 '아미노산 서열 알아내는 법'이라는 화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측하며 읽는 것도 가능해야 해요.

**6문단**

①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알기 위한 실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펩타이드의 분자량 분석**이다. ②미지의 단백질에 트립신을 가하여 평균 10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조각인 **펩타이드**로 자른 후 분자량을 측정한다. ③**트립신**은 특정 아미노산을 인지하여 자르므로 어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가 잘릴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④실제로 단백질체를 분석한 데이터는 펩타이드의 분자량 값과 펩타이드들 간의 상대적인 양을 숫자로 표현한 값으로 나타난다. ⑤모든 인간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아미노산의 분자량이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암세포 단백질체와 정상 세포 단백질체에 트립신을 가하여 얻은 펩타이드의 분자량 분석을 통해 치료용 표적 후보 단백질을 알아낼 수 있다.

**① #화제의 흐름 #수식된 정의 제시**

예상한 그대로,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알기 위한 실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펩타이드의 분자량 분석'이라고 해요. 그 과정을 확실하게 이해해봅시다.

**② #수식된 정의 제시 #재진술**

'암세포'에서 개수가 크게 변한 미지의 단백질에 '트립신'을 가합니다. 그럼 평균 10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조각인 '펩타이드'가 된다고 해요. '펩타이드'의 정의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단백질이 일반적으로 500개 정도의 아미노산을 가진다고 했으니 '펩타이드'는 '얇은 단백질 조각'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잘린 '펩타이드'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것이 '암 치료 표적 단백질'의 후보를 찾는 방법인 거예요.

**③~④ #정의 제시 #재진술**

이때 '트립신'은 특정 아미노산을 인지하여 자릅니다. 그렇기에 '트립신'을 가하기 전에 어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가 잘릴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해요. 나아가 실제 이 방법을 이용하면 '펩타이드'의 분자량 값과 '펩타이드'들 간의 상대적인 양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는 '미지의 단백질을 정확히 알기 쉬운 덩어리들로 자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⑥ #재진술**

다행히 모든 인간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및 분자량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세포 단백질체와 정상 세포 단백질체에 '트립신'을 가하여 얻은 '펩타이드'의 분자량 및 상대적인 양 등을 분석하면, '암 치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료용 표적 후보 단백질'을 알아낼 수 있겠네요. 두 세포의 단백질체를 모두 '트립신'으로 자르는데, 이때 '트립신'이 어떤 아미노산에만 적용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펩타이드'를 분석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만약 같은 단백질이라면, '펩타이드 조합' 역시 동일하겠죠? 무작위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아미노산만 골라서 자르기 때문에 같은 단백질을 자르면 늘 같은 '펩타이드 조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상 세포에 비해 양이 크게 변화한 암세포의 '펩타이드 조합'들을 골라내고, 이것과 같은 조합을 가지는 단백질을 찾아내면 '암 치료용 표적 후보 단백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⑤모든 인간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아미노산의 분자량이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암세포 단백질체와 정상 세포 단백질체에 트립신을 가하여 얻은 펩타이드의 분자량 분석을 통해 치료용 표적 후보 단백질을 알아낼 수 있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 '아미노산 서열을 밝혀 암 치료 표적 단백질을 찾는다는 화제의 흐름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러 갈 수 있어야 해요.

**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⑤**

① 신경 세포의 모든 RNA는 단백질로 번역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일부만!
해설	DNA가 RNA가 되는 '전사 과정' 및 RNA가 단백질이 되는 '번역 과정'은 모두 '일부'에만 일어나는 것이었죠? 두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체크했다면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었을 겁니다.

② 인간 간세포의 유전체 정보는 인간 간세포의 단백질체 정보의 일부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유전체는 전부 다 가지고 있지.
해설	'유전체'는 그 시스템이 수행 가능한 모든 기능에 대한 유전 정보를 총괄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체'의 정보 역시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애초에 '단백질체'가 '유전체'의 일부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구요.

③ 인간 간세포의 단백질체 정보는 생쥐 간세포의 단백질체 정보와 동일하다.

명시적 근거	2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애초에 유전체가 다른데?

해설	인간 간세포의 '유전체' 정보와 생쥐 간세포의 '유전체' 정보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납득했습니다. 선지에서 묻는 것은 '단백질체'인데, 2번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생각했듯이 이는 '유전체'의 일부죠? 서로 다른 것의 일부이니, 그 일부도 당연히 서로 다를 것입니다.
----	---

④ 암세포는 피부나 근육의 세포와 달리 정상 세포에서 분화한 것이 아니다.

명시적 근거	3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암세포는 정상 세포에서 분화한 거지.
해설	화제의 흐름이 '암세포'로 바뀐다는 것을 생각하며 체크했던 정보입니다. '암세포' 역시 다른 세포들처럼 정상 세포에서 분화한 것이었어요.

⑤ 암세포의 단백질체 정보는 정상 세포의 단백질체 정보와 동일하지 않다.

명시적 근거	3문단 4번~5번 문장, 4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다르니까 비교가 가능하지.
해설	'암세포'는 정상 세포에서 분화한 것입니다. '분화'를 하게 되면 단백질의 조합도 달라진다는 것, 당연하게 납득했던 내용이죠? 나아가 이렇게 단백질의 조합이 다르기 때문에, 즉 '단백질체'의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암 치료용 표적 후보 단백질'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볍게 답으로 골라낼 수 있겠네요.

8. 밑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㉔

① 세포의 분화 과정 동안 세포의 유전체 정보는 변화하지 않는다.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유전체는 전체 정보니까 당연히 그대로지.
해설	세포가 '분화'하면 다른 세포로 변할 수 있지만, 그 변한 세포 역시 '유전체'에 들어 있는 정보일 것입니다. '유전체'는 그 시스템이 수행 가능한 모든 기능에 대한 유전 정보를 총괄하니까요. 따라서 세포가 '분화'하더라도 '유전체' 정보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거예요.

② 어떤 단백질에 트립신을 첨가한 후에 생성되는 펩타이드들의 아미노산 서열은 동일하다.

명시적 근거	5문단 2번 문장, 6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500개를 10개 정도씩 자른 건데 같을 리가 있나.

해설	단백질 하나의 아미노산 개수는 평균 500개인데, '트립신'을 가하면 이를 10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펩타이드'로 자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아미노산 서열이 이리저리 섞이겠죠? 모든 '펩타이드'들의 아미노산 서열이 같다면 애초에 정상 세포 단백질과의 비교를 통한 '암 치료용 표적 후보 단백질'을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추론입니다. '펩타이드 분자량 분석법'이라는 핵심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당연하게 답으로 고를 수 있었을 거예요.
----	---

③ 인간의 신경 세포와 근육 세포의 기능이 서로 다른 이유는 단백질체 정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5번~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일은 단백질이 하지.
해설	실제로 '일'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단백질'이라는 점, 확실하게 체크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세포마다 기능이 다른 것은, 그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는 '단백질체'의 정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④ 어떤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알면 트립신 처리 후 그 단백질에서 생성될 펩타이드들의 분자량을 예측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6문단 3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트립신이 어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를 자를지 미리 알 수 있다고 했잖아.
해설	'트립신'은 특정 아미노산을 인지하여 자르므로, 어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가 잘릴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각 아미노산의 분자량 역시 모두 알려져 있으므로, 어떤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알면 '트립신'을 가했을 때 어디서 잘릴 것인지, 나아가 그 분자량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두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역시 '트립신'을 활용해 '암 치료용 표적 후보 단백질'을 알아내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⑤ 어떤 단백질에서 유래한 특정 펩타이드의 양이 정상 세포에서 보다 암세포에서 더 많다면 그 단백질은 발암 단백질의 후보이다.

명시적 근거	4문단 4번 문장, 6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펩타이드 분자량 분석법'을 그대로 물어보고 있죠? 어떤 단백질에서 유래한 특정 '펩타이드'의 양이 암세포에서 많이 보인다면, 이는 정상 세포가 분화하는 과정에서 암세포에서 양이 늘어난 단백질이라는 의미이고, 이것을 '발암 단백질'의 후보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지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

	고서, '실전에서 판정 과정'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해요.
--	---------------------------------

9. ㉠~㉣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최초의 생명체가 DNA나 단백질은 가지고 있지 않고 RNA만 가지고 있었다면, ㉠의 설득력은 약화된다.

㉠ 생명체에서 생화학 반응의 촉매 작용과 같은 필수적인 '일'을 직접 수행하는 물질은 단백질체를 이루는 단백질들이다.

명시적 근거	4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정 과정	단백질 없이도 일을 했다는 거니까 약화되지.
해설	최초의 생명체가 DNA가 단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즉 '유전체'나 '단백질체' 없이 '전사체'만 가지고 있었다면 필수적인 '일' 역시 모두 '전사체'가 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는 '단백질'이 '일'을 직접 수행한다는 ㉠의 설득력을 약화시키겠죠.

㉡. 양이 많아지면 덩어리를 이루어 오히려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단백질이 있다면, ㉡의 설득력은 약화된다.

㉡ 암세포에서 정상 세포보다 양이 늘어나 있는 단백질은 발암 단백질의 후보가 될 수 있고, 암세포에서 정상 세포보다 양이 줄어든 단백질은 암 억제 단백질의 후보가 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5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정 과정	많을수록 발암 단백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그 논리가 깨지네.
해설	㉡은 '양이 많을수록 암세포의 분화에 더 많은 기능을 했을 것'이라는 논리하에 전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양이 많아지면 오히려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단백질이 있다면, 이런 단백질은 예외적으로 봐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죠? 이는 ㉡의 완벽한 설득력을 약화시키겠네요.

㉢. 트립신을 첨가한 서로 다른 단백질에서 같은 분자량을 지닌 펩타이드가 생성된다면, ㉢의 설득력은 강화된다.

㉢ 펩타이드의 분자량 분석을 통해 치료용 표적 후보 단백질을 알아낼 수 있다.

명시적 근거	6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정 과정	펩타이드만으로 어떤 단백질인지 모른다는 건데, 당연히 약화되지.
해설	㉢의 핵심은 '펩타이드의 분자량 분석'을 통해 '단백질'의 정체성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트립신'을 첨가한 서로 다른 단백질에서 같은 분자량을 지닌 '펩타이드'가 형성된다면, 이는 해당 방법의 유효성 자체를 떨어뜨리게 되겠죠. 열심히 '펩타이드'를 분석하고 비교했더니 후보가 여러 개 나온다고 하면, ㉢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	---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의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④ 초반 정보 견디기 :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초반부에 정보를 잔뜩 던지고, 후반부에는 그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논의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초반부의 정보만 잘 견디면 뒤에서 편해집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초반부의 정보를 견디고, 그 내용을 끌고 와서 후반부의 핵심적인 정보를 이해한다는 전형적인 과학·기술 지문의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 읽고 있는 정보가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지, 즉 해당 정보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화제의 흐름을 잡는 것의 중요성도 배울 수 있는 지문이었어요. 이런 부분에 맞춰서 다시 복습해보도록 합시다.